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2239 판결 모욕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20노2239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재웅(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박성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20고정1116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향하여 댓글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다.'는 의미로 '붕신은 버엉신과 통한다.'라고 작성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이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표현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설교 내용이나 교리적 주장(과학주의적 사고방식과 충돌이 일어나는 성경 내용을 모두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취지)을 기독교 교리 중 '성령의 잉태, 육체부활, 재림' 등을 부정하는 이단이라 평가하고 있었고, 2019. 10. 21.부터 비판적인 취지로 피해자의 설교 내용을 공유하거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이를 비판적으로 공유하는 C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단'이라던가, '좌익 불신자'라는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점, 2 이 사건 댓글은 2019. 10. 25. Col 피해자가'E 교수'의 'F'라는 책을 추천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공유한 게시글에 단 댓글로 그 내용은 '일단은 이단과 통하듯이 붕신은 버엉신과 통한다'는 내용인바, '붕신'이나 '버엉 신'은 피고인의 독창적인 조어가 아니라 비속어인 '병신'으로 용이하게이해할 수 있는 점, 3 피고인이 평소 E 교수의 신학적 입장 또한 이단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결국 E 교수와 피해자 모두를 싸잡아 이단임과 동시에 '병신'이라고 표현한 것임이 문맥상 충분히 명확하다판단되는 점, 4 타인의 종교적 입장에 관하여 '이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을 '병신'이라고 욕한 것은 마땅히 모욕죄가 성립될 정도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모욕할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점, 5 피고인에게 '이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병신'이라고 욕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장재윤(재판장) 오현석 최선상